

##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. 이선 위원장외 2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2. 3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2. 3.

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장 이 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경비를 조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별표3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신설
  - 의정자료수집,연구비 : 900,000원
  - 보조활동비 : 200,000원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,
-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550,000원에서 900,000원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200,000원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부 :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
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의정활동비지급기준)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3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서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의정활동비지급기준)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, 연구비로 550,000원을 지급한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지급기준)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3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

<신 설>

[별표 3]

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

(단위 : 원)

구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 수집연구비	보조활동비
군의회 의원	월 900,000	월 200,000원